



주식회사 효성(HYOSUNG CORPORATION) (한국) VS 정주 중원 차별화 섬유 유한공사 등 상업비밀침해 분쟁 사건

43

01 서지 사항

국가 법원	중국 최고인민법원	사건번호	(2013)民三终字第3-1号
판결 일자	2013년 7월 29일	판결 결과	신청기각(권리자 패)
신청인	주식공사 효성		
피신청인	1. 정주 중원 차별화 섬유 유한공사, 2. 산둥 루의 과학기술 집단 유한공사, 3. 제녕 루이 첨단 섬유 재료 유한공사		
참조 법령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64조, 제81조, 제108조		
참조 판례			
영업비밀	스판텍스 관련 기술		
키워드 (Keyword)	차압(查封), 압류(扣押), 증거보전(证据保全)		

02 사건 개요

한국 기업 주식공사 효성은 피신청인들에 대해서 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에 증거조사 수집을 위한 증거보전 신청을 하였다.

효성이 증거보전 신청을 한 대상 증거는 피신청인들 점유의 2차 반응기 및 기술 설계도,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한 재무장부이다.

신청이유는 위 증거들이 피신청인들의 처리 하에 있으므로 직접 수집하고 취득하기 어렵고, 소송제기 후에는 멸실의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03 주요 쟁점

신청인



피신청인

증거보전 신청 (해당 증거들이 피신청인 점유 하에 있으므로 직접 수집이 어려움, 멸실 위험) (나타나지 않음)

04 판결 요지

효성이 제공한 영업비밀 권리의 유효한 존재, 침해행위에 대한 초보 증거를 살펴보고, 증거 보전 신청을 하였으나 멸실 위험에 직면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증거보전 신청을 기각하였다.

05 Key Point

중국에서 영업비밀 등 지적권 침해 소송을 함에 있어서도,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증거 수집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중국에서도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하여 증거 수집을 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81조는 『증거가 멸실 위험이 있거나 혹은 이후 취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가 소송과정 중 인민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할 수 있고, 인민법원도 주동적으로 보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 증거가 멸실 위험이 있거나 혹은 이후 취득하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신청을 하기 전에 증거의 소재지, 피신청인 주소지 혹은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할 수 있다』 고 규정한다.

위 민사소송법 제81조에 의하여 소송제기 전에 증거보전 신청을 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증거 수집을 하였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아쉬움이 있다.